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 입법경과 및 향후 과제

요 약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이 2021년 7월 시행되면, 보험산업 및 고용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됨. 정부 당국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산업과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1. 개정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

- 2020년 12월 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기존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이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가입률이 매우 저조함
 -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②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간 보험료 공동 부담, ③ 소득감소 이직 시 실업급여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적용 직종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되나, 정부 방침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14개 직종부터 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임
 - (보험료 부담비율) 노무제공자와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나, 구체적 부담비율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임
 - 근로자와 예술인은 고용보험료 부담비율(사업주와 각 1/2씩 부담)이 법률에 정해져 있음



CEO Brief

- (실업급여 수급요건) 비자발적 이직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소득감소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수급자격을 인정함
 - 근로자와 달리 해고보다 소득감소에 의한 이직이 빈번한 실정을 감안한 것이지만, 반대로 부정수급을 위한 고의적 소득감소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한 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함
 - (적용제외 요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내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함
 -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는 효과를 가짐
 - (적용제외자에 대한 효과) 현재 적용제외 상태인 자의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추어 다시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오는 7월 이후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됨
 - (보험료경감 근거마련) 사실상 적용확대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대응 및 과제

-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양측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서 보험회사의 채널 및 조직 운영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됨
 - 입법 과정에서 4대보험 전면 적용 시 41만 보험설계사 중 최대 17만 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보험설계사 설문조사에서도 고용보험 당연가입보다 임의가입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고, 산재보험보다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음
 - 정부 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합리적 배분, 산재보험료 경감 등으로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산업과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득감소에 의한 이직 시 수급자격 인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과 보험산업 실정을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인정 등도 검토되어야 함



CEO Brief

- 보험회사는 개정법 및 예상효과를 검토하여 시행령 등 입법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오는 7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준법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로 인한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제도를 합리화하고, 보험회사 운영전략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양승현 연구위원
shyang@kiri.or.kr